

의안번호	제2903호
의결	. . .
연월일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김석한 의원 등 5인
발의연월일	2025. 2. 18.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석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03
----------	------

발의연월일 : 2025. 2. 18.

발 의 자 : 김석한, 최두임, 허옥희,
김향숙, 김원순 의원(5인)

1. 제안이유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현금 지급방식을 수당 지원사업의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여 농어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개정하며, 현재 상시 운영하고 있는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 운영에서 임시 운영으로 변경(안 제5조)
- 나. 심의위원회 임시 운영에 따른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6조 및 제7조)
- 다. 심의위원회 임시 운영에 따른 위원회 운영 간소화(안 제9조)
- 라. 고성군 농어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당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수당의 현금 지급방식을 군의 여건에 따라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8호

- 예고기간: 2025. 2. 18.(화) ~ 2025. 2. 24.(월)[6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심의하기 위하여”를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으로, “둔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안전을 심의·의결한 후 군수에게 심사 결과를 제출한 때에 자동 해산한다.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는”을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성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경상남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의 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u>심의하기 위하여</u>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u>둔다</u>. ② (생략) <u><신설></u>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u>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u> ----- ----- <u>구성</u> <u>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회는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군수에게 심사 결과를 제출한 때에 자동 해산한다</u>.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략) ⑤ <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⑥ (생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7조(위원의 해촉) <u>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u>. 1. <u>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 2. <u>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u>	⑥ (현행과 같음) <u><삭제></u>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
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
최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
다 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
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

② (생략)

③ 농어업인수당은 고성군 관내
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단서 신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위원장은 -----

-----.

제11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고성군에서 사용
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경

<u><신 설></u> <u>④</u> (생 략)	<u>상남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 단으로 지급한다.</u> <u>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성군 의 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u> <u>⑤ (현행 제4항과 같음)</u>
---	---

관 계 법 령(발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